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발의년월일 : 2003. 12. 18

발 의 자 : 이기동의원

1. 수정이유

-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보는 경과 조치 조항과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각각 신설하고
- 기타 일부자구를 수정하여 동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시행규칙과 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을 각각 신설 함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11조)
 -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안 부칙(1992.5.1 조례 제1984호) 제2조)
-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8조)
 - 운용 → 운영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8조 중

- “운용” 을 “운영” 으로 한다.

○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1992.5.1 조례 제1984호) 제2조를 제3조로 조문 변경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조(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